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36호 2023. 1. 3.(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62호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22-163호	군계획시설(유원지:대명리조트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6
남해군 고시 제2022-165호	우물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2차) 승인 고시	9
남해군 고시 제2022-167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고시	11
남해군 고시 제2022-1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4
남해군 고시 제2022-1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5
남해군 고시 제2022-171호	독일마을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6
남해군 고시 제2022-172호	독일마을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9
남해군 고시 제2022-173호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66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1718호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	70
남해군 공고 제2022-1725호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2
남해군 공고 제2022-1738호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7
남해군 공고 제2022-1754호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84
남해군 공고 제2022-1757호	남해군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 제도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운영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93
남해군 공고 제2022-1760호	남해군 농업·농어촌 자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8
남해군 공고 제2022-1761호	남해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103
남해군 공고 제2022-176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11
남해군 공고 제2022-177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12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62호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나. 위 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516-2번지 일원
- 다. 사업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L=250m
- 라. 사업비 : 금1,400,000원(금십사억원)
- 마. 사업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6월
- 바. 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

2. 설계도서 열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3. 다른 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4.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해소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5.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이후	비 고
사업내용	- 실시설계 - 정비사업	- 실시설계 - 정비사업	-	
사업비(천원)	1,400,000	1,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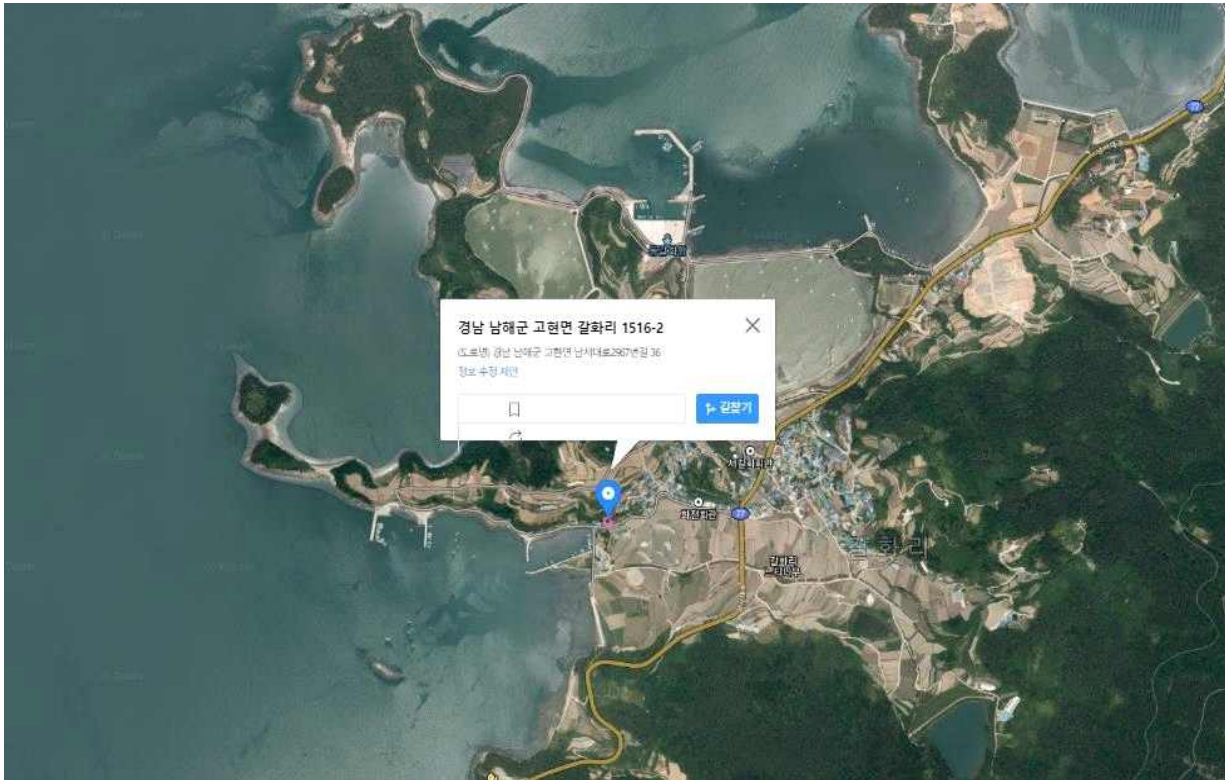
6. 유지관리계획

- 가. 정비공사 완료 후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을 조정하고 (필요시)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
-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로 안전 및 유지관리 만전을 기함.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명세 : 엑셀참조

8. 기타사항 :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55-860-32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및 전경사진



편입용지조사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내용	
1	남해	고현	갈화	1549-4	진	539	정막오	남해군 고현면					
2	남해	고현	갈화	1548-1	진	261	강용오	부산광역시 사하구					
3	남해	고현	갈화	1520-2	진	790	김한오	남해군 고현면					
4	남해	고현	갈화	1522	진	512	유영오	남해군 고현면					
5	남해	고현	갈화	1520-3	진	218	김호오	남해군 고현면					
6	남해	고현	갈화	1772	도	24	국	국(국토교통부)					
7	남해	고현	갈화	1517	진	202	김호오	남해군 고현면					
8	남해	고현	갈화	1516-5	대	8	임규오	남해군 고현면	새남해농업00	고현면 00			
9	남해	고현	갈화	1516-4	대	132	김경오	양산시 동면	고현농업00	고현면 00			
10	남해	고현	갈화	1515-1	대	35	하삼오	남해군 고현면	삼00	서울 종로구 00			
11	남해	고현	갈화	1521-3	진	2	김호오	남해군 고현면					
계						2,723				0			

남해군 고시 제2022-163호

군계획시설(유원지:대명리조트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미조면 송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남해 대명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군계획시설(유원지:대명리조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경미한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개발팀 (☎055-860-34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남 해 군 수

1. 군관리계획(유원지:대명리조트)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2.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증감율			
합 계	93,153	93,153	-	-	-	100.0	
휴양시설	17,516	16,661	-	855	-	4.88%	<건축물 높이> (당초)B3~16F (변경)B2~14F
특수시설	13,143	10,460	-	2,683	-	20.41%	
관리시설	11,855	11,698	-	157	-	1.32%	
편익시설	1,222	993	-	229	-	18.74%	
녹지시설	49,417	53,341	+	3,924	+	7.94%	

나. 세부시설

시설명	시설번호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93,153	93,153	-	20,454	26,686	증 6,230	89,217	85,817	감 3,400
휴양시설			17,516	16,661	감 855	12,300	15,334	증 3,034	86,646	83,342	감 3,304
숙박시설 (타 워)	1	1	5,624	6,648	증 1,024	7,857	6,648	감 1,209	74,760	64,412	감 10,348
숙박시설 (테라스)	-	2	-	10,013	증 10,013	-	8,686	증 8,686	-	18,930	증 18,930
숙박시설 (빌리지1)	2	-	4,438	-	감 4,438	1,473	-	감 1,473	3,876	-	감 3,876
숙박시설 (빌리지2)	3	-	4,307	-	감 4,307	1,451	-	감 1,451	3,409	-	감 3,409
숙박시설 (빌리지3)	4	-	2,210	-	감 2,210	1,025	-	감 1,025	3,250	-	감 3,250
숙박시설 (빌리지4)	5	-	937	-	감 937	494	-	감 494	1,351	-	감 1,351
특수시설			13,143	10,460	감 2,683	5,142	8,390	증 3,248	1,145	-	감 1,145
광장1	6	3	5,860	4,853	감 1,007	4,149	4,853	증 704	-	-	-
광장2	7	4	3,911	3,758	감 153	731	3,537	증 2,806	883	-	감 883
광장3	8	5	3,372	1,849	감 1,523	262	-	감 262	262	-	감 262
관리시설			11,855	11,698	감 157	791	1,967	증 1,176	-	-	-
도로	9	6	10,751	9,519	감 1,232	-	-	-	-	-	-
주차장	10	7	221	212	감 9	-	-	-	-	-	-
기타	11	8	883	1,967	증 1,084	791	1,967	증 1,176	-	-	-
편익시설			1,222	993	감 229	2,221	993	감 1,228	1,426	2,475	증 1,049
카페동	12	9	795	993	증 198	2,155	993	감 1,162	1,360	2,475	증 1,115
전망대	13	-	427	-	감 427	66	-	감 66	66	-	감 66
녹지시설			49,417	53,341	증 3,924	-	-	-	-	-	-
원형녹지	14	10	24,191	24,191	-	-	-	-	-	-	-
조성녹지	15	11	25,226	29,150	증 3,924	-	-	-	-	-	-

3. 실시계획(변경) 조서 : 변경

가. 사업의 위치 : 변경 없음

-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36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 없음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유원지:대명리조트)사업
- 명칭 :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변경 없음

- 면적 A=93,153㎡(휴양시설, 특수시설, 관리시설, 편익시설, 녹지시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구분	성명	주소
당초	최주영, 민병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변경	김정훈, 민병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기정 : 2023. 6. 30.
 - 변경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변경 없음

4.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 고시 제2022-165호

우물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2차)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1조에 의거 우물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2차)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우물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위생 및 안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비 : 1,965,000천원(국비 1,480,000, 지방비 485,000), 자부담 별도(49,684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생활·위생 인프라 : 마을안길 정비(574㎡), 안전펜스 설치 1식, 마을안전시설 정비 및 조성(CCTV 등 1식), 하수시설 조성(1,394m), 재래식화장실 정비(2호)
- 주택정비 지원 : 빈집정비(26호), 슬레이트지붕개량(12호), 집수리(4호)
- 마을환경 개선 : 마을주차장 조성(319㎡), 마을공원조성(277㎡), 마을회관정비(1식)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요가교실, 치매예방교실, 노래교실, 백서제작, 리더 교육, 주민교육, 마을발전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 분야별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 종)	사업량	사 업 비 / ()외서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1,965,000	1,476,944	488,056	(49,684)
생활 위생 안전 인프라	소 계		1,083,513	846,668	236,845	-
	■ 마을안길정비	574m ²	97,675	78,140	19,535	-
	■ 안전웬스설치	1식	45,877	36,702	9,175	-
	■ 마을안전시설정비 및 조성	CCTV 등	89,807	71,845	17,962	-
	■ 하수시설조성	1,394m	840,521	652,275	188,246	-
	■ 재래식화장실정비	2호	9,633	7,706	1,927	-
주택 정비	소 계		361,557	253,089	108,468	(49,684)
	■ 빈집정비	26호	156,107	109,275	46,832	(7,722)
	■ 슬레이트지붕개량	12호	189,717	132,801	56,916	(32,368)
	■ 집수리	4호	15,733	11,013	4,720	(9,594)
마을 환경 개선	소 계		209,229	158,799	50,430	-
	■ 주차장 조성	319m ²	95,280	76,224	19,056	-
	■ 마을공원 조성	277m ²	106,408	76,542	29,866	-
	■ 마을담장 정비	-	0	0	0	-
	■ 마을회관 정비	1식	7,541	6,033	1,508	-
휴먼 케어	소 계		22,493	15,745	6,748	-
	■ 요가교실	1식	6,182	4,327	1,855	-
	■ 치매예방 교실	1식	3,064	2,145	919	-
	■ 노래교실	1식	7,065	4,946	2,119	-
	■ 백서제작	1식	6,182	4,327	1,855	-
주민 역량 강화	소 계		16,362	12,353	4,009	-
	■ 리더교육	1식	2,299	1,609	690	-
	■ 주민교육	1식	3,532	2,472	1,060	-
	■ 마을발전워크숍	1식	1,531	1,072	459	-
	■ 선진지견학	1식	9,000	7,200	1,800	-
제경비	소 계		271,846	193,346	78,500	-
	■ 기본 및 마스터 플랜수립	1식	48,569	33,998	14,571	-
	■ 세부설계비	1식	53,761	37,632	16,129	-
	■ 공사감리비	1식	123,832	86,682	37,150	-
	■ 사업관리비	1식	26,246	18,372	7,874	-
	■ 잡지출	1식	19,438	16,662	2,776	-

5.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6.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7. 기타(시행계획 열람 장소)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지역활성화(☎ 055-860-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2-167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고시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22.

남 해 군 수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본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609,114,284	566,524,506	42,589,778	7.52%
일 반 회 계	532,762,416	486,310,100	46,452,316	9.55%
특 별 회 계	76,351,868	80,214,406	△3,862,538	△4.82%
상수도특별회계	21,338,242	27,153,018	△5,814,776	△21.41%
청사건립특별회계	20,000,000	17,687,500	2,312,500	13.0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36,556	755,024	81,532	10.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2,000	229,700	△7,700	△3.35%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3,955,070	34,389,164	△434,094	△1.26%

□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본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532,762,416	486,310,100	46,452,316	9.55%
지방세 수입	29,071,166	23,728,253	5,342,913	22.52%
지방세	29,071,166	23,728,253	5,342,913	22.52%
세 외 수 입	18,513,879	19,779,818	△1,265,939	△6.40%
경상적세외수입	10,033,379	9,385,590	647,789	6.90%
임시적세외수입	7,989,898	9,905,828	△1,915,930	△19.34%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90,602	488,400	2,202	0.45%
지방교부세	248,627,000	208,715,000	39,912,000	19.12%
조정교부금등	23,123,254	25,351,150	△2,227,896	△8.79%
보조금	185,991,245	184,136,833	1,854,412	1.01%
국고보조금등	139,149,333	141,202,197	△2,052,864	△1.45%
도비보조금등	46,841,912	42,934,636	3,907,276	9.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435,872	24,599,046	2,836,826	11.53%
보전수입등	27,435,872	24,446,194	2,989,678	12.23%
내부거래	0	152,852	△152,852	△100.00%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본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76,351,868	80,214,406	△3,862,538	△4.82%
지방세			-	
세외수입	5,062,442	4,630,308	432,134	9.33%
경상적세외수입	4,814,000	4,366,950	447,050	10.24%
임시적세외수입	73,242	86,858	△13,616	△15.68%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75,200	176,500	△1,300	△0.74%
지방교부세			-	
보조금	16,500,656	25,687,766	△9,187,110	△35.76%
국고보조금등	6,701,272	18,562,013	△11,860,741	△63.90%
도비보조금등	9,799,384	7,125,753	2,673,631	37.5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788,770	49,896,332	4,892,438	9.81%
보전수입등	1,125,582	1,000,000	125,582	12.56%
내부거래	53,663,188	48,896,332	4,766,856	9.75%

□ 세출예산

○ 일반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본예산)	증 감	비고
합 계	532,762,416	486,310,100	46,452,316	9.55%
인 건 비	66,666,527	60,419,253	6,247,274	10.34%
물 건 비	33,962,791	35,295,133	△1,332,342	△3.77%
경 상 이 전	195,272,249	178,503,953	16,768,296	9.39%
자 본 지 출	172,779,976	161,022,759	11,757,217	7.30%
용 자 및 출 자	42,000	20,600	21,400	103.88%
내 부 거 래	53,998,189	41,515,832	12,482,357	30.07%
예 비 비 및 기 타	10,040,684	9,532,570	508,114	5.33%

○ 특별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본예산)	증 감	비고
합 계	76,351,868	80,214,406	△3,862,538	△4.82%
인 건 비	875,770	2,561,224	△1,685,454	△65.81%
물 건 비	8,047,813	5,931,060	2,116,753	35.69%
경 상 이 전	8,937,476	7,613,802	1,323,674	17.39%
자 본 지 출	32,994,657	51,094,832	△18,100,175	△35.42%
용 자 및 출 자			-	
내 부 거 래	25,464,328	13,000,000	12,464,328	95.88%
예 비 비 및 기 타	31,824	13,488	18,336	135.94%

남해군 고시 제2022-1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상덕천(지방하천)
2. 성 명 : 김수0
3. 주 소 : 남해군 남면 고실로00
4. 점용목적 : 우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 남해군 남면 상가리 1305-1번지(998관련)
6. 점용면적 : 5㎡
7. 점용기간 : 2023. 1. 1. ~ 2027. 12. 31.

남해군 고시 제2022-1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 하천 점용 연장 허가 현황

번호	하천명	점용위치	면적 (㎡)	연장기간	점용목적	소유자 현황	
						소유자	
						주소	성명
1	대사천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98-1	396	2018. 1. 1. ~ 2027. 12. 31.	경작	남해군 고현면 삼봉로 00	이수0
2	금양천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82 (1249-1관련)	52	2019. 11. 15. ~ 2023. 12. 31.	부지평탄화, 진입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0	강치0
3	삼화천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7-1	56	2015. 1. 1. ~ 2027. 12. 31.	구조물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00	남선0
4	대사천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28-1	695	2018. 1. 1. ~ 2027. 12. 31.	경작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00	김덕0
	대사천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25-7	149	2018. 1. 1. ~ 2027. 12. 31.	경작		
5	대사천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35-3	149	2018. 1. 1. ~ 2027. 12. 31.	경작	남해군 고현면 탑동로 00	고태0
6	대사천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979-1	552	2018. 1. 1. ~ 2027. 12. 31.	경작	남해군 고현면 삼봉로 00	이정0
7	오룡천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534	25	2013. 2. 19. ~ 2027. 12. 31.	경작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00	이옥0

남해군 고시 제2022-171호

독일마을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남 해 군 수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독일마을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군도12호선(시문~동천)확포장공사)
-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삼동면 동천리 일원
- 면 적 : 119,989.4㎡ (도로개설: L=5,240m, B=8.0m)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지정목적 : 독일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기반시설인 도로가 협소하여 관광객 및 주민불편이 더욱 증가할 것임에 따라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고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진입도로 확장하고자 함.
- 시행기간 : 2022 ~ 2026(5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 시 행 자 : 남해군수
- 시행방식 : 수용에 따른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 계획 수립
- 공사구간내 오탁방지막 및 침사시설 설치로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수립

5. 인구수용 ·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 해당없음
- 교통처리계획 :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비대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 총길이 5km이상 신설 노선에 해당하지 않음
- 토지이용계획 : 도로개설 L=5,240m, B=8.0m

구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기타
면적(㎡)	119,989.4	6,503	20,834	18,609	3,957	61,637	8,449.4
필지 수	629	39	141	49	47	303	50
구성비(%)	100	5.4	17.4	15.5	3.3	51.4	7.0

6.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주요기반시설: 도로개설: L=5,240m, B=8.0m
- 해당사업은 선형개량 및 도로 확 · 폭장에 따른 기반시설정비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함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재 원 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계	249.06	38.23	27	55	48	80.83	
국 비	84.5	23.78	13.5	18.5	18	10.72	
지방비(군비)	164.56	14.45	13.5	36.5	30	70.11	

9. 보건의료 · 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포함한다)

○ 보상계획

- 총 사업부지면적: 629필지 / 119,989.4㎡
- 사유지 편입면적: 369필지 / 62,127㎡(보상비: 약 21.06억원)
- 토지보상협약: 2022~2023

○ 조성토지 공급계획

- 본 사업은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기반시설 관리권자인 남해군에서 유지 관리를 함.

11. 제27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붙임1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은 남해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포함되었으며, 관광지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발전 및 교통량 분산을 통해 관광객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개발계획의 기본목적에 부합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법에 따른 관계기관협의 및 의제 사항을 완료하였으며, 개별법령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지정예정임.

15. 지형도면 : 붙임참조

16. 관계서류 및 도서(지형도면 등)는 남해군 건설교통과(☎055-860-3313)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2-172호

『독일마을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독일마을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남 해 군 수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독일마을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군도12호선(시문~동천) 확포장공사)
-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삼동면 동천리 일원
- 면 적 : 119,989.4㎡ (도로개설: L=5,240m, B=8.0m)

2.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독일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기반시설인 도로가 협소하여 관광객 및 주민불편이 더욱 증가할 것임에 따라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고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진입도로 확장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2 ~ 2026(5년)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5,240m, B=8.0m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 방식

-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시 행 방식 : 수용에 따른 방식

4. 관계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

○ 2022년 경상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검토사항 및 조치계획

안 건 명	검 토 사 항	조 치 계 획	비고
독일마을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추진 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물을 설치 반영하였으며, 공사시 한국농어촌공사와 별도협의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대상일 경우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기 협의된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1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61조 제 2항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구간의 확장구간이 국도3호선과 직접 접하지 못하고, 삼동면 동천마을 입구에서 기존 마을길을 활용해서 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부 접속부는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삼거리 접속안으로 변경하였으며, 삼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반영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사업의 특성 상, 일부 구간의 확장은 확장되지 못한 나머지 구간에서 여러 가지 안전(교통처리 불량 등) 및 소통 문제(병목 현상 등)를 야기하므로, 국도3호선과 직접 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득이하게 직접 접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우면, 동천마을의 마을길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및 시설 등을 보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기존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산지부 깎기 공사시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파 공법을 선정하고, 발파 전 시험발파를 통하여 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해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독일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은 독일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향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마을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 해당 도로구간은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을 방문하는 관광객 차량이 급증한 노선으로 농업인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했을 때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진행시 요구되는 행정절차 및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과 대응계획이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행정이행 절차가 무리없이 추진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서 검토결과 조치계획 및 협의완료 된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음. 단지 향후 사업진행시 요구되는 행정절차 및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과 대응계획이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추진 필요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승인 시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고
<p>경상남도</p>	<p>【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6388, 2022.4.27)</p> <p>•협의 결과 : 조건부 동의</p> <p>1) 사업시행은 협의 요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 편입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경우 등 「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p> <p>2)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 등)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용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p> <p>3)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 토사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 및 가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완벽히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p> <p>4) 사업부지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목적외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p> <p>5) 전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p> <p>6)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2]제3호다목에 따라 100% 감면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p> <p>7) 기타 개별법(타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p>	<p>-사업계획의 변경시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p> <p>-변경사항 발생시 관련 의견을 준수하여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p> <p>-농업생산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물을 설치 반영하였으며, 공사시 한국농어촌공사와 별도 협의를 이행하도록 하겠음.</p> <p>-조치사항 없음.</p> <p>-도로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제 협의를 이행하였음.</p>	<p>반영</p> <p>반영</p> <p>반영</p> <p>반영</p>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p>남해군청</p>	<p>【건설교통과-농업기반시설의견】 (건설교통과-19681, 2022.2.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동면 영지리 3063-15필지 등 10필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기존 목적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체시설 설치하여 사용하기 바람. 	<p>-농업생산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물을 설치 반영하였음.</p>	<p>반 영</p>
	<p>【도시건축과-농지전용】 (도시건축과-10152, 2022.3.8)</p> <p>금번 군도12호선(시문~동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전용협의 대상농지는 삼동면 6개 마을을 따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연속하여 이어지고 있으며,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업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필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도로의 확포장을 위한 사업의 특수성과 위치성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을 위한 농지편입은 적정함.</p> <p>해당 도로구간은 중앙분리선 없이 1차선으로 이어지고 도로굴곡이 많은 반면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을 방문하는 관광객 차량은 많은 노선으로, 농작업을 위해 본 도로를 이용하는 농업인 및 지역주민에 편의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를 위함 사업의 당위성이 있음.</p> <p>도로 확포장을 통한 주변 관광지로의 접근성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기대됨.</p> <p>이상과 같이 군도1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함으로 편입되는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관광객 유치 증대 등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농지분야 협의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p>	<p>-조치계획없음.</p>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p>남해군</p>	<p>【도시건축과-산지전용】 (도시건축과-114293. 2022.3.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지전용(협의)변경허가 수리되었기에 통보함. • 산지전용협의 요청시 미제출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지관리법」에 따라 1ha이상 사업은 산지복구감리 대상으로 착공 전 산지복구감리계약서를 제출하시고, 목적 사업은 허가받은 기간 내 완료하고 허가기간만료 10일 전까지 복구설계서 및 제선충방제완료 신고서, 산지복구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 복구준공검사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p>- 조치계획 없음.</p> <p>-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p>	<p>반영</p>
	<p>【주민복지과-분묘개장】 (주민복지과-14445. 2021.09.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4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신청지 내 분묘가 있을 시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는 편입분묘의 연고자와 협의 후 절차에 따라 개장신고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무연고 분묘의 경우 무연분묘개장허가를 득한 후 추진. 	<p>-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p>	<p>반영</p>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p>남해군</p>	<p>【재난안전과-하천 및 소하천점용】 (재난안전과과-8022, 2021.11.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화천, 화천(지방하천) • 공사완료 후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설계도면대로 준공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함. - 삼화천, 화천(지방하천) • 공사완료 후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설계도면대로 준공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시행 시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시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겠음. 	<p>반영</p> <p>반영</p>
<p>남해군</p>	<p>【도시건축과-도시계획 및 실시】 (도시건축과-9953, 2022.3.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의견 -요청사항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 처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는 본 의견으로 같음합니다.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고시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군관리 계획 결정) 및 제88조(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내용과, 같은 법 제32조(지형도면의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 지구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기 위한 지형도면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고시하기 전에 위치정보가 포함된 지형도면의 CAD 전산파일과 검수용도면 출력물(1)검수요청서,(2)지역지구등 제작관리대장,(3)품질검토서를 작성하여 우리과에 검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치계획 없음 -관련법에 따라 도로구역결정고시시 지형도면등재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하겠음. -관련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도를 작성하여 검수작업을 요청하도록 하겠음. 	<p>반영</p> <p>반영</p>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또한, 공사 완료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공사완료의공고)에 따라 (4)공사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완료시 의견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소-116, 2022.3.3) • 협의의견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용수공급 및 배수, 토지 진출입 등 영농행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시설 등을 계획 반영하여야 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등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계획을 반영하였음.	반영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72	8	보조 간선 도로	6,538	삼동면 봉화리 986-5	삼동면 봉화리 2242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1호선
변경	소로	2	72	8	보조 간선 도로	6,539	삼동면 봉화리 986-5	삼동면 봉화리 2242	일반 도로	-		군도11호선
기정	소로	2	73	8	보조 간선 도로	7,864	이동면 난음리 1794-1	삼동면 동천리 산400-2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2호선
변경	소로	2	73	8	보조 간선 도로	7,837	이동면 난음리 1794-1	삼동면 동천리 산400-2	일반 도로	-		군도12호선
금회 시행	소로	2	73	8	보조 간선 도로	5,235	삼동면 영지리 1196-10	삼동면 동천리 산402-2	일반 도로	-		군도12호선
기정	소로	2	111	9	집산 도로	882	삼동면 봉화리 1036-4	삼동면 봉화리 1159-3	일반 도로	-	남해군 고시 제2017-6호 (2017.01.25.)	
변경	소로	2	111	9	집산 도로	897	삼동면 봉화리 2322	삼동면 봉화리 1159-3	일반 도로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보) 2-72	소로(보) 2-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연장 변경 연장: 6,538m → 6,539m(증: 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도12호(시문~동천)확포장공사에 따른 교통시설 선형변경 및 교통시설 사면부를 교통시설로 결정함으로 인한 접속부 소로2-72호선 연장 증가 및 가각부 변경.
소로(보) 2-73	소로(보) 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선형변경 및 시설연장축소 연장: 7,864m → 7,837m(감: 27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도12호(시문~동천)확포장공사에 따른 교통시설 선형변경 및 교통시설 사면부를 교통시설로 결정.
소로(집) 2-111	소로(집) 2-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연장 및 종점변경 기점: 기정(봉화리 1036-4) → 변경((봉화리 2322) 연장: 882m → 897m(감: 1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도12호(시문~동천)확포장공사에 따른 교통시설 선형변경 및 교통시설 사면부를 교통시설로 결정으로 인한 접속부 소로2-111호선 연장 증가 및 가각부 변경..

[실시계획인가 협의 내용]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 동천리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 독일마을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군도12호선(시문~동천) 확포장공사)
- 사업의 면적 : 119,989.4㎡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5.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재 원 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계	249.06	38.23	27	55	48	80.83	
국 비	84.5	23.78	13.5	18.5	18	10.72	
지방비(군비)	164.56	14.45	13.5	36.5	30	70.11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붙임1.

7. 제27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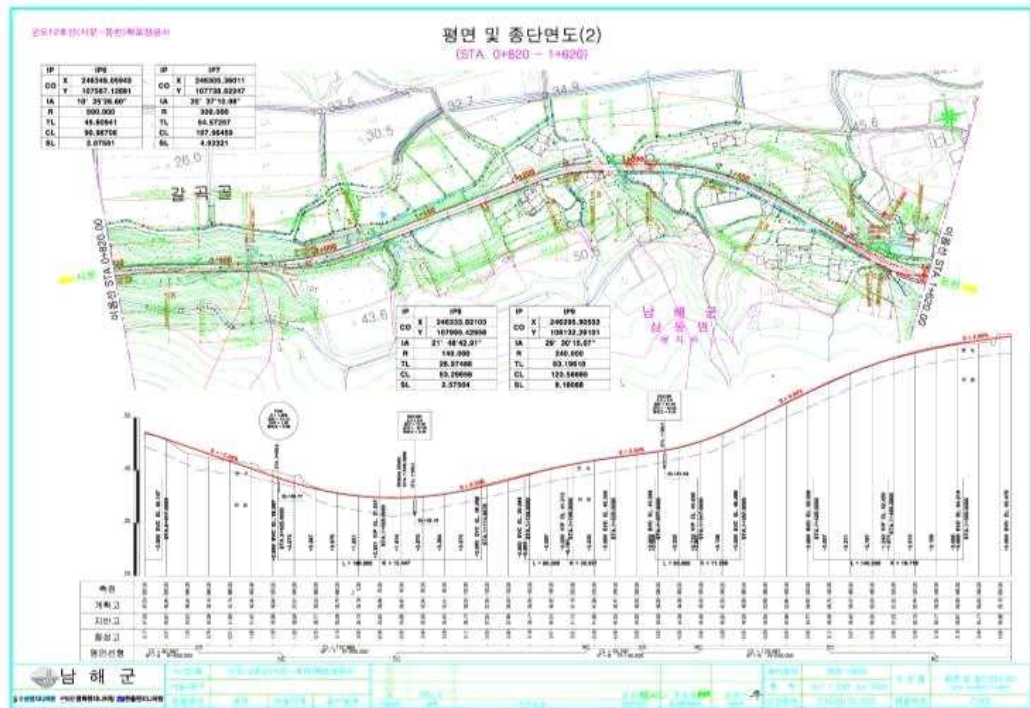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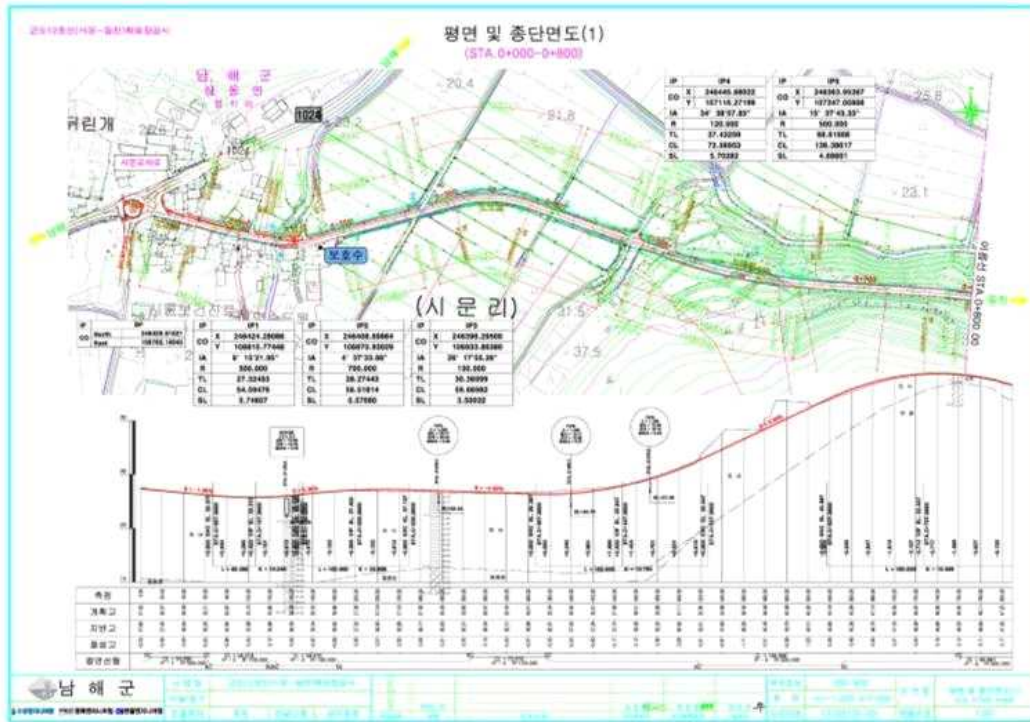
8. 관계서류 및 도서(설계도면 등)는 도(균형발전과) 및 남해군 건설교통과(☎ 055-860-33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열람기간 : 2022. 12. 29. ~ 2023. 1. 12.(14일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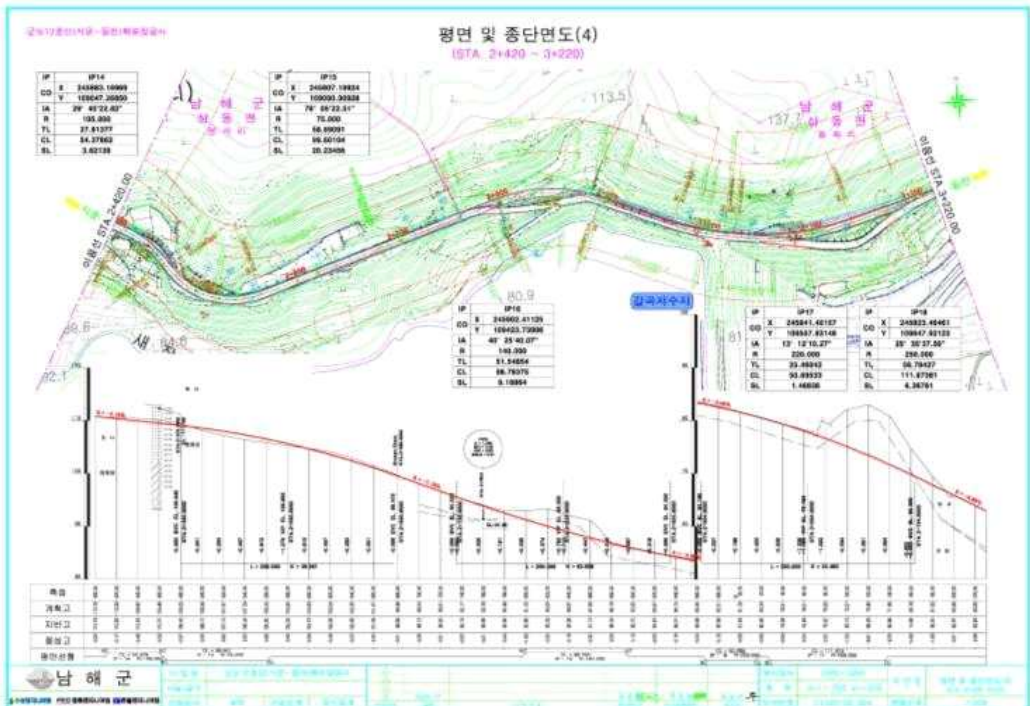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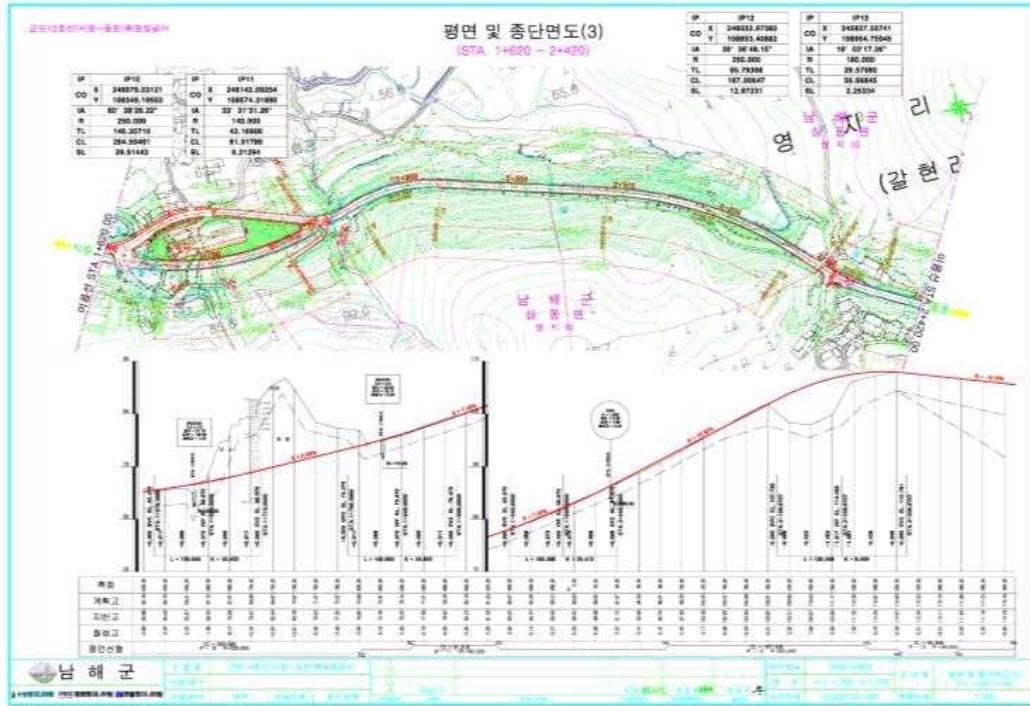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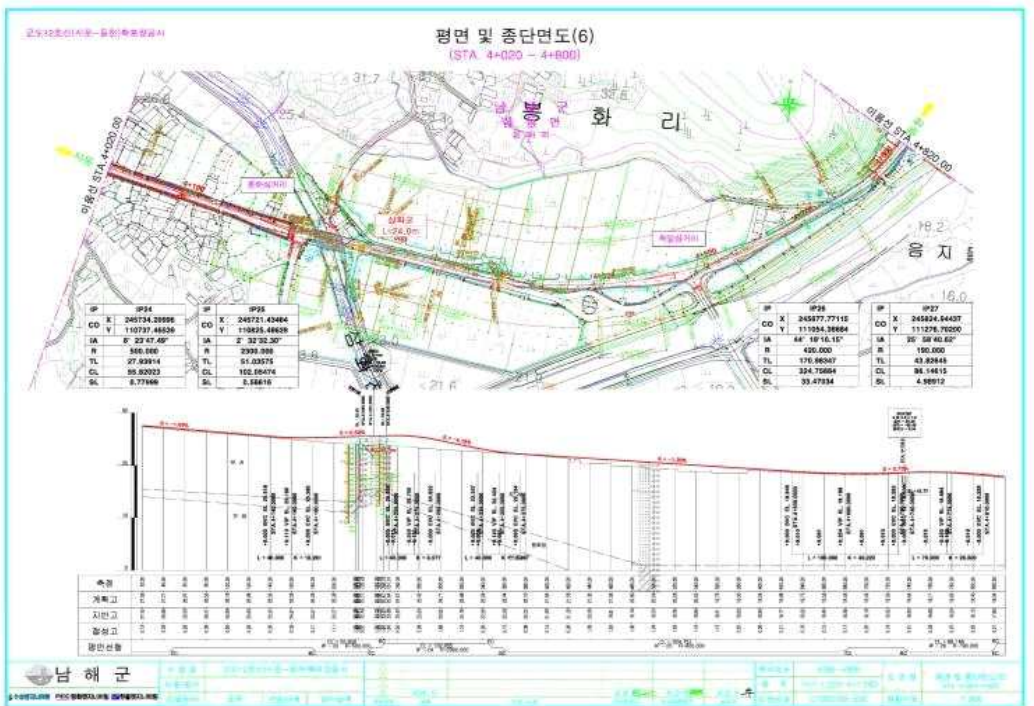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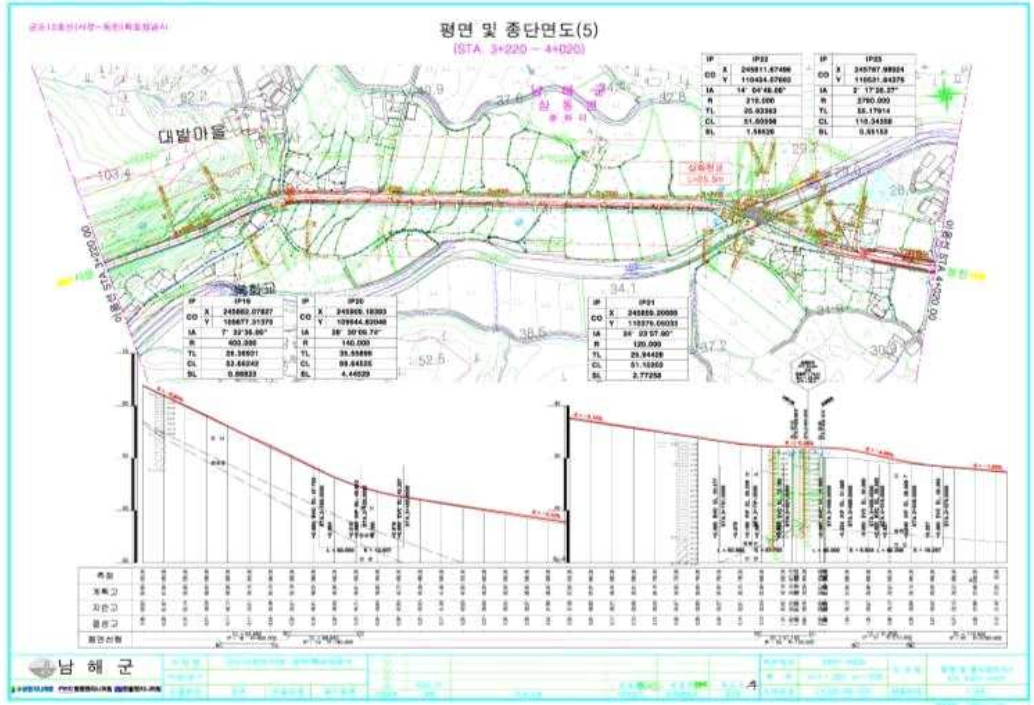
계획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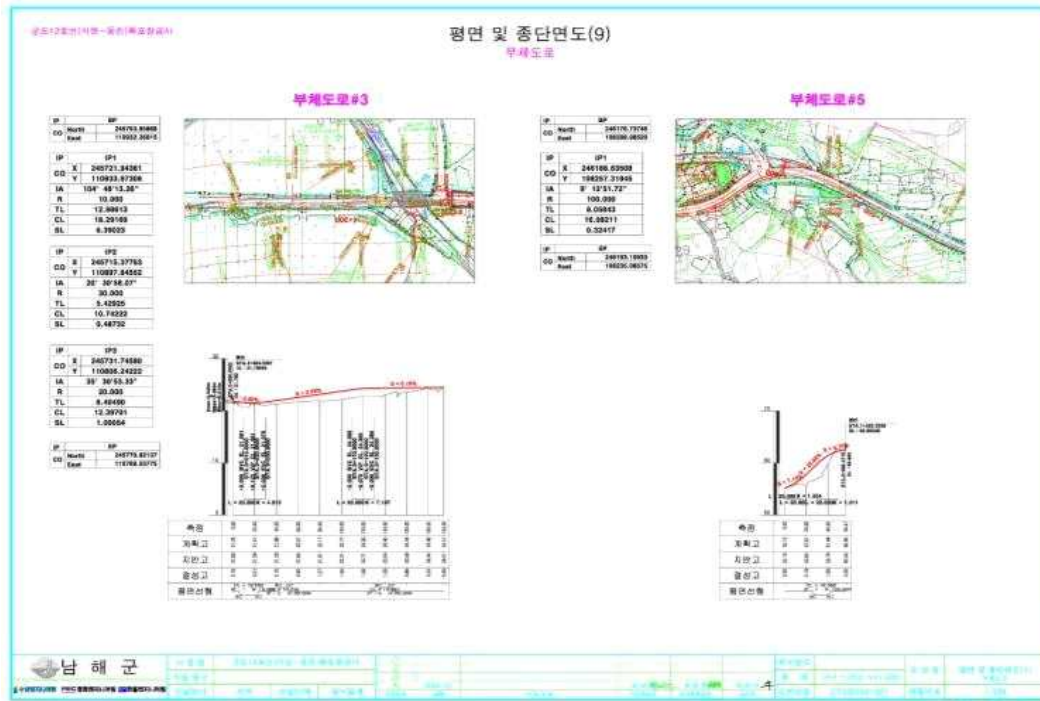
계획 평면도



계획 평면도



계획 평면도



□ 편입토지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96-6	도	20	1	(공)남해군	
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96-10	도	7	1	김*심 외 1인	
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96-3	도	185	3	(국)국토교통부	
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96-5	도	158	71	(공)남해군	
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56-2	도	274	227	(공)남해군	
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56-1	전	36	36	(국)기획재정부	
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55	전	648	113	홍*태	
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104-11	도	515	273	(국)국토교통부	
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54-2	대	833	172	홍*표	
1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54-3	대	101	101	홍*섭	
1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54-9	도	8	8	홍*일	
1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51-4	도	119	31	(공)남해군	
1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51-5	도	37	37	(공)남해군	
1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51-3	답	456	233	홍*남	
1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51-2	도	79	79	(공)남해군	
1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091	구	9,888	288	(국)농림축산식품부	
1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25-2	도	73	63	(공)남해군	
1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25-3	도	58	58	(공)남해군	
1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25-1	전	59	36	김*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2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26	전	43	43	정*승	
2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26-1	도	2	2	정*승	
2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290	답	272	95	윤*영	
2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19-1	도	23	23	김*일	
2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28-1	도	7	7	(공)남해군	
2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17-4	도	82	82	(공)남해군	
2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289	답	421	109	김*훈	
2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29-3	도	8	8	(공)남해군	
2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29-2	도	3	3	(공)남해군	
2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266	답	1,051	152	김*훈	
3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223	구	279	246	(국)농림축산식품부	
3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33-3	도	181	181	(공)남해군	
3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33-2	도	212	212	(공)남해군	
3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265	답	1,584	100	박*웅	
3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089-2	도	480	480	(국)국토교통부	
3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264	답	500	82	강*환	
3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35-1	도	109	109	(공)남해군	
3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37-3	도	17	17	정*용	
3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47	도	1,040	55	(국)농림축산식품부	
3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37-4	도	126	126	(공)남해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4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291	답	1,217	398	전*태	
4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36-1	도	122	122	유*만	
4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37-2	도	7	7	정*용	
4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9-1	도	102	102	(공)남해군	
4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96-3	도	46	46	(공)남해군	
4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96-2	도	79	79	(공)남해군	
4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98-3	도	8	8	(공)남해군	
4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98-2	도	10	10	(공)남해군	
4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8-2	도	145	145	(공)남해군	
4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8-4	도	17	17	홍*수	
5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292	답	1,891	307	이*식	
5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43	구	14,674	100	(국)농림축산식품부	
5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0-2	도	307	307	(공)남해군	
5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306	답	1,748	479	정*룡	
5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0-3	도	369	369	(공)남해군	
5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4-1	답	13	13	박*섭	
5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1-2	도	33	33	(공)남해군	
5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1-4	도	31	31	(공)남해군	
5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307	도	352	30	(국)농림축산식품부	
5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2-1	전	368	47	윤*영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6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2-5	도	144	113	(공)남해군	
6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2-2	도	63	63	(공)남해군	
6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301-2	도	893	789	(공)남해군	
6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301-7	도	178	178	(공)남해군	
6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301-6	도	289	247	(공)남해군	
6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301-1	임	1,397	18	박*호	
6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9-6	도	247	115	이*승	
6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9-1	임	4,315	257	이*승	
6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9-2	도	793	681	(공)남해군	
6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9-7	도	600	466	이*승	
7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8-2	도	793	717	(공)남해군	
7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8-6	도	41	24	(공)남해군	
7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62-1	도	149	74	(공)남해군	
7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57-1	도	155	110	(공)남해군	
7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58-1	도	43	11	최*재	
7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58-2	답	536	10	박*응	
7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23-1	도	17	2	정*남	
7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089	도	305	92	(국)국토교통부	
7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226	도	116	23	(국)농림축산식품부	
7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19-2	도	116	43	(공)남해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8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17-2	도	202	138	(공)남해군	
8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17-5	도	3	2	(공)남해군	
8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34-1	도	63	63	최*선	
8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34-3	도	34	34	최*선	
8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436	답	1,060	38	홍*원	
8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35-3	도	58	58	최*선	
8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434	도	2,102	10	(국)농림축산식품부	
8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319	구	3,898	31	(국)농림축산식품부	
8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431	답	1,950	23	임*호	
8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36-3	도	55	55	(공)남해군	
9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432	답	1,669	53	홍*녀	
9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433	답	1,672	173	이*국	
9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9-3	도	133	133	(공)남해군	
9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8-5	도	108	108	(공)남해군	
9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4-2	도	519	519	(공)남해군	
9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4-4	도	168	168	(공)남해군	
9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308	답	1,517	119	김*선	
9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1-3	도	13	13	(공)남해군	
9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2-4	답	4	4	미르영농조합법인	
9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2-6	도	3	3	(공)남해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0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3-4	장	2,383	45	미르영농조합법인	
10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2-3	도	20	20	(공)남해군	
10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3-3	도	15	15	최*석	
10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3-1	도	66	66	(공)남해군	
10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883-2	임	315	70	김*숙	
10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301-3	임	6,218	2,289	김*엽	
10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300	임	375	11	김*기	
10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301-8	임	21	21	김*엽	
10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9-5	임	328	95	이*승	
10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8-5	도	530	227	최*조	
11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8-1	임	2,240	22	최*조	
11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7-6	도	312	312	이*봉	
11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7-1	임	3,952	582	이*봉	
11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7-2	도	1,289	1,155	(공)남해군	
11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063-13	구	3,592	9	(국)농림축산식품부	
11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078	도	378	24	(국)국토교통부	
11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48	답	79	2	고*적	
11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6-2	도	298	208	(공)남해군	
11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1-2	도	793	689	홍*승	
11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1-1	임	548	32	홍*승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2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1-4	도	146	39	(공)남해군	
12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47-1	답	14	4	홍*토	
12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47-3	도	188	176	(공)남해군	
12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47-2	도	43	43	박*순	
12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79-1	도	18	18	(공)남해군	
12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86-1	도	11	11	(공)남해군	
12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87-1	도	164	164	(공)남해군	
12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96-2	구	1,037	359	한국농어촌공사	
12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9-2	도	496	496	(공)남해군	
12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9-1	임	298	166	전*현	
13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078-3	도	966	436	(국)국토교통부	
13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8-16	도	66	22	(공)남해군	
13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90-5	전	355	2	최*민	
13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90-8	도	25	20	(공)남해군	
13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8-4	도	496	393	(공)남해군	
13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90-6	도	72	72	(공)남해군	
13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90-2	도	89	53	(공)남해군	
13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90-4	대	585	5	최*민	
13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90-7	도	265	265	(공)남해군	
13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8-2	도	397	212	(공)남해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4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98-2	구	1,491	118	(국)농림축산식품부	
14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91-4	도	30	30	(공)남해군	
14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91-2	도	23	23	(공)남해군	
14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063-14	구	765	125	(국)농림축산식품부	
14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6-1	도	3	3	(공)남해군	
14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7-7	잡	87	50	최*정	
14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7-8	임	232	40	최*정	
14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7-1	전	924	64	최*정	
14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7-3	도	14	14	최*정	
14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7-5	도	1,190	970	(공)남해군	
15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7-30	도	87	81	최*정	
15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7-9	임	310	6	최*정	
15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7-4	도	97	97	최*정	
15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7-2	전	491	141	최*정	
15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7-31	도	211	211	(공)남해군	
15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7-12	임	4,252	241	손*철	
15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4-4	전	863	55	최*현	
15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7-3	도	496	496	최*	
15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4-7	구	206	46	한국농어촌공사	
15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4-8	전	169	110	최*현	

남 해 군 공 보

(42) 제 736 호

2023년 1월 3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6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4-11	도	8	8	창*이선	
16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무지번	-		198	사유지	
16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4-13	답	244	141	윤*성	
16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4-4	도	387	387	(공)남해군	
16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4-1	임	109	109	조*태	
16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4-6	창	330	208	윤*성	
16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3-1	도	298	298	(공)남해군	
16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4-14	목	685	298	윤*성	
16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3-2	도	298	298	(공)남해군	
16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7-7	도	990	477	이*봉	
17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7-5	임	1,725	522	이*봉	
17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6-7	도	325	325	(공)남해군	
17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6-5	임	2,594	893	김*곤	
17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45-2	도	3	3	이*원	
17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45-3	도	221	216	정*진	
17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45-1	답	546	546	박*성	
17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1-3	임	2,764	447	박*성	
17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91-5	도	310	310	(공)남해군	
17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9-3	도	99	99	(공)남해군	
17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30	답	1,175	25	김*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8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31	답	1,281	65	최*신	
18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32	답	1,907	12	최*신	
18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9-9	도	468	384	(공)남해군	
18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9-4	임	7,165	46	서*덕	
18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8-15	도	502	373	김*철	
18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40-2	대	482	21	김*삼 외 1인	
18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90-1	대	381	5	최*민	
18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8-14	도	141	16	이*섭	
18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39-1	도	7	7	(공)남해군	
18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39-3	도	33	33	최*완	
19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39-2	전	20	20	최*원	
19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40-7	전	1,226	40	정*숙	
19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6-5	도	47	47	(공)남해군	
19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6-2	답	634	6	최*아	
19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6-3	답	175	4	손*희	
19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6-6	도	90	73	창*이선	
19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7-29	도	230	19	(공)남해군	
19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무지번	-	43	4	사유지	
19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7-33	도	34	20	(공)남해군	
19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3-11	전	20	17	창*이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20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3-10	구	258	64	한국농어촌공사	
20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3-15	도	225	24	창*이선	
20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7-32	도	128	57	(공)남해군	
20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3-18	잡	143	7	윤*성	
20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4-3	임	10,786	48	박*진	
20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4-2	도	298	289	최*수	
20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4-9	도	435	316	(공)남해군	
20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4-12	전	33	33	(공)남해군	
20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4-10	전	115	115	윤*성	
20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73-3	도	397	357	최*실	
21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063-15	구	3,188	560	(국)농림축산식품부	
21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2-2	도	174	174	(공)남해군	
21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2	답	617	617	최*신	
21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1-3	대	302	302	박*수	
21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70-30	도	420	420	(공)남해군	
21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2-1	대	322	322	최*신	
21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1	대	389	389	전*지	
21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1-1	대	419	419	전*지	
21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70-38	임	3,086	2,972	최*식	
21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90-3	대	267	267	김*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22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90-6	도	54	54	최*식	
22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70-2	도	1,686	1,638	(공)남해군	
22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70-31	도	158	127	(공)남해군	
22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90-5	도	89	76	박*례	
22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70-16	임	72	3	최*진	
22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70-22	구	652	195	(국)국토교통부	
22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8-6	도	867	829	최*두	
22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8-4	임	1,712	188	최*정	
22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8-2	도	1,190	1,190	최*두	
22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58-1	전	529	54	최*정	
23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55	임	22	22	최*정	
23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55-1	도	8	8	최*도	
23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5-6	도	474	411	(공)남해군	
23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5-2	도	1,587	1,429	(공)남해군	
23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5-1	임	2,232	283	강*경	
23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5-5	도	305	283	(국)국토교통부	
23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5-7	도	71	71	(공)남해군	
23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3-5	도	155	155	(공)남해군	
23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4	임	4,463	1,847	정*옥	
23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3-1	임	440	440	김*경 외 1인	

남 해 군 공 보

(46) 제 736 호

2023년 1월 3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24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65-2	답	1,236	454	정*욱	
24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3-2	임	174	174	김*경 외 1인	
24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65-1	답	976	578	이*덕	
24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3-6	도	322	322	(공)남해군	
24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65-5	답	922	436	이*덕	
24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65-4	도	16	16	강*근	
24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07-1	임	496	47	강*대	
24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07-2	도	30	25	(공)남해군	
24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67-2	도	103	76	(공)남해군	
24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67-1	대	208	37	강*대	
25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68-3	도	60	60	강*희	
25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68-1	임	66	66	강*희	
25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05-1	임	44,780	39	경주최씨영지백년산소 문중	
25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08	임	39,769	18	최*길 외 1인	
25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69-2	도	90	90	(공)남해군	
25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69-1	대	20	20	김*이	
25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0-10	임	565	538	최*렬	
25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061	도	2,741	802	(국)국토교통부	
25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0-2	도	893	836	(공)남해군	
25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83-8	전	6,147	208	최*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26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4-2	도	182	182	전*지	
26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3-1	답	134	9	전*지	
26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3	답	342	216	전*지	
26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2-4	답	138	76	최*신	
26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2-5	답	29	5	최*신	
26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1-2	대	296	296	전*지	
26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74-1	임	7,340	260	송*수	
26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70-3	임	7,957	1,130	최*진	
26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90-7	전	1,165	573	최*진	
26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70-32	도	27	27	(공)남해군	
27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8-3	임	8,524	29	최*정	
27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8-5	도	397	84	최*두	
27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5-8	도	987	185	최*진	
27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3-7	도	1,959	668	(공)남해군	
27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3-3	도	1,388	1,323	(공)남해군	
27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2-1	도	20	14	(공)남해군	
27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62-2	임	992	7	경주김씨수은공파 삼동문중	
27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0-2	전	229	29	최*규	
27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0-3	도	17	17	(공)남해군	
27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1-1	도	8	1	최*진 외 1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28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0-1	도	497	227	(공)남해군	
28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2-1	도	327	302	김*수	
28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2-9	도	133	133	(공)남해군	
28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0-5	도	485	470	(공)남해군	
28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2-5	대	1,340	62	최*열	
28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0-1	임	2,364	13	최*열	
28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2-4	임	3,006	143	진*우	
28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3	임	447	18	진*우	
28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3-1	도	49	49	(공)남해군	
28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2-6	도	1,188	703	(공)남해군	
29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4-26	전	9,166	153	김*연	
29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4-5	창	660	34	김*연	
29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2-3	도	644	581	(국)국토교통부	
29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4-4	도	99	99	(공)남해군	
29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3-2	도	772	665	(공)남해군	
29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4-3	도	198	186	(공)남해군	
29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060	도	552	408	(국)국토교통부	
29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6-1	도	99	93	(공)남해군	
29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9-1	도	539	157	(공)남해군	
29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5-3	도	198	198	(공)남해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30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4-2	도	176	176	(공)남해군	
30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4-1	전	158	158	최*심	
30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4-3	전	575	342	(공)남해군	
30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4-8	전	926	140	최*도	
30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5-2	유	1,156	207	한국농어촌공사	
30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4-25	도	27	27	(공)남해군	
30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4-7	전	1,137	1,038	박*정	
30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4-2	도	298	267	(공)남해군	
30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4-17	전	2,686	469	박*정	
30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4-1	답	1,054	313	박*정	
31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4-3	도	53	53	(공)남해군	
31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5-2	도	112	112	(공)남해군	
31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34-2	전	177	16	강*경	
31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33-4	전	220	47	김*엽	
31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33-1	도	10	10	최*근	
31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33-5	도	5	5	(공)남해군	
31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33-2	대	200	73	최*규	
31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0-11	임	302	236	(공)남해군	
31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2-2	도	198	172	(공)남해군	
31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2-7	임	263	34	(공)남해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32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6-2	도	992	474	(공)남해군	
321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6-6	임	6,599	128	최*도	
322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4-6	임	16,527	17	하*욱 외 1인	
323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9	답	478	12	최*도	
324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5-5	도	34	9	(공)남해군	
325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42	도	3	3	김*수	
326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15-1	도	99	84	(공)남해군	
327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75-1	묘	10	10	정*봉	
328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2-6	도	49	49	(공)남해군	
329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12-7	도	20	20	(공)남해군	
330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90-4	도	93	39	박*례	
33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44	구	711.0	72.0	(국)농림축산식품부	
33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679-2	도	10.0	10.0	백*순이	
33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679-3	도	55.0	55.0	백*순이	
33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682	답	63.0	63.0	김*범	
33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679-1	답	295.0	156.0	김*봉	
33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39-4	도	214.0	214.0	(공)남해군	
33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40-5	도	780.0	765.0	(국)국토교통부	
33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39-2	도	99.0	99.0	김*호	
33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39-1	임	3,909.0	481.0	이*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34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681-1	전	90.0	90.0	김*삼	
34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680-3	도	200.0	200.0	(공)남해군	
34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39-5	도	12.0	12.0	(공)남해군	
34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39-3	유	1,172.0	187.0	한국농어촌공사	
34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680-2	도	17.0	17.0	김*조	
34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680-1	유	44.0	44.0	한국농어촌공사	
34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47-2	도	198.0	192.0	(공)남해군	
34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40-9	도	273.0	270.0	(공)남해군	
34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40-4	도	198.0	178.0	(공)남해군	
34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40-7	도	1,765.0	1,429.0	(공)남해군	
35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40-1	임	22,673.0	3,514.0	김*우	
35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52-1	도	251.0	251.0	(공)남해군	
35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46-3	도	298.0	281.0	(공)남해군	
35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46-2	임	1,230.0	17.0	김*관	
35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683-1	도	478.0	36.0	(공)남해군	
35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37	임	7,835.0	11.0	김*규	
35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681-2	도	69.0	69.0	김*조	
35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52	전	337.0	118.0	김*인	
35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50-3	도	90.0	90.0	(공)남해군	
35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51	도	46.0	46.0	(공)남해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36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46-1	도	99.0	99.0	(공)남해군	
36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46-5	도	216.0	194.0	(공)남해군	
36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40-8	도	130.0	130.0	(공)남해군	
36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40-3	도	99.0	99.0	김*인	
36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95	도	2,712.0	616.0	(국)국토교통부	
36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9	전	1,250.0	730.0	정*기	
36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9-5	도	1,075.0	1,075.0	(공)남해군	
36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9-1	전	567.0	270.0	정*수	
36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9-2	대	282.0	36.0	김*심	
36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9-12	도	22.0	22.0	정*순	
37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9-16	도	29.0	29.0	(공)남해군	
37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9-3	도	142.0	140.0	김*조	
37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60-1	대	287.0	36.0	정*기	
37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7-5	도	40.0	40.0	김*현	
37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7-10	대	162.0	14.0	정*기	
37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8-4	답	609.0	137.0	이*해	
37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7-4	답	1,547.0	242.0	김*숙	
37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7-17	답	105.0	105.0	한국농어촌공사	
37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7-3	도	400.0	400.0	김*현	
37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7-20	대	457.0	26.0	삼화마을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38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7-1	답	694.0	64.0	정*수	
38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7-16	답	638.0	52.0	김*화	
38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7-15	답	53.0	13.0	김*재	
38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65-1	도	33.0	33.0	김*주	
38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65-2	도	116.0	116.0	김*주	
38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3-1	답	1,892.0	72.0	김*재	
38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46-4	답	172.0	172.0	한국농어촌공사	
38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65-3	답	2,196.0	335.0	정*기	
38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66-2	도	3,541.0	3,475.0	(공)남해군	
38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1-4	답	953.0	287.0	전*례	
39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1-3	답	723.0	158.0	정*기	
39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72-2	답	1,500.0	342.0	정*기	
39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0-2	도	152.0	152.0	김*현 외 2인	
39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47-2	도	50.0	50.0	김*주	
39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72-5	답	611.0	115.0	김*진 외 3인	
39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95	답	2,123.4	236.0	장*덕	
39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96	구	30.7	30.7	(국)농림축산식품부	
39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94	답	1,189.1	149.0	장*덕	
39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92-15	도	42.0	32.0	(국)국토교통부	
39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93	답	1,170.4	167.0	허*숙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40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42-2	도	185.0	185.0	김*주	
40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41-2	도	812.0	807.0	(공)남해군	
40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92	답	1,123.3	193.0	정*원	
40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78	답	1,952.8	46.0	박*준	
40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79	답	885.3	34.0	김*재	
40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20-2	도	314.0	314.0	김*현	
40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80	답	898.2	56.0	김*호	
40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81	답	1,743.9	256.0	김*필	
40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82	답	854.5	211.0	김*환	
40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83	답	1,421.7	262.0	김*열	
41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88	구	172.5	125.0	(국)농림축산식품부	
41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83-1	천	17.3	17.3	(공)남해군	
41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84	답	1,386.5	81.0	박*열	
41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84-1	천	89.4	89.4	(공)남해군	
41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89	도	516.9	276.0	(국)농림축산식품부	
41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85-1	천	97.3	23.0	(공)남해군	
41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33-1	전	855.0	530.0	김*진	
41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93-2	구	210.0	161.0	(국)농림축산식품부	
41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30-1	대	258.0	91.0	김*진	
41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30-2	도	13.0	13.0	(국)기획재정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42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30-3	대	357.0	89.0	김*표 외 1인	
42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39-1	도	281.0	250.0	(국)기획재정부	
42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30-4	대	99.0	12.0	이*희	
42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29-1	대	605.0	35.0	조*남	
42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46-1	답	126.0	126.0	(공)남해군	
42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29	답	927.0	105.0	조*섭	
42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46-2	도	245.0	243.0	김*주	
42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28-1	전	53.0	10.0	김*봉	
42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93-3	구	92.0	69.0	(국)농림축산식품부	
42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47-1	대	69.0	69.0	김*봉	
43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45-1	도	255.0	238.0	(공)남해군	
43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48-1	대	73.0	73.0	김*봉	
43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48-2	도	76.0	76.0	(공)남해군	
43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93-4	구	3.0	3.0	(국)농림축산식품부	
43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50-1	전	1,249.0	120.0	김*관	
43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146-6	임	233.0	19.0	김*관	
43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55-1	도	114.0	62.0	(공)남해군	
43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9-15	도	55.0	7.0	김*현	
43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9-14	도	25.0	14.0	김*현	
43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9-13	도	2.0	2.0	김*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44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9-4	대	43.0	1.0	박*철	
44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9-9	대	28.0	25.0	한국농어촌공사	
44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8-1	답	75.0	5.0	박*복	
44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3-3	답	175.0	3.0	김*찬	
44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66-1	답	348.0	38.0	김*호	
44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2-1	답	2,398.0	74.0	황*하	
44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1-1	답	50.0	24.0	김*찬	
44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50-1	답	612.0	72.0	김*찬	
44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46-1	답	1,813.0	63.0	김*윤	
44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73-8	답	123.0	8.0	박*열 외 3인	
45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73-3	답	10.0	1.0	장*덕	
45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773-4	답	638.0	22.0	김*열	
45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77	도	18.9	7.0	(국)농림축산식품부	
45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76	답	697.0	95.0	김*길	
45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442-1	답	569.0	90.0	김*주	
45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91	답	453.5	96.0	김*환	
45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80-3	도	93.0	45.0	(국)국토교통부	
45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17-2	도	2.0	2.0	김*진	
45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29	천	27,580.0	1,148.0	(국)국토교통부	
45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17-1	도	36.0	36.0	(공)남해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46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93	구	105.0	31.0	(국)농림축산식품부	
46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23-1	천	27.0	27.0	(공)남해군	
46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34-1	전	93.0	93.0	김*재	
46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23	전	82.0	54.0	김*환	
46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79	도	787.0	59.0	(국)국토교통부	
46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33-4	도	38.0	27.0	김*희	
46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33-2	도	208.0	54.0	(공)남해군	
46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39-2	대	315.0	20.0	김*열	
46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829-2	답	134.0	1.0	이*희	
46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80-6	도	140.0	103.0	(국)국토교통부	
47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73-2	답	389.0	24.0	김*진	
47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71-4	답	36.0	35.0	김*섭	
47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72-1	대	750.0	75.0	강*숙	
47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72-7	도	7.0	7.0	김*수	
47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72-8	도	26.0	26.0	김*만	
47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72-3	대	950.0	79.0	김*만	
47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71-2	도	926.0	831.0	(공)남해군	
47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71-1	답	1,155.0	176.0	김*섭	
47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70-3	답	1,101.0	33.0	정*기	
47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69-2	도	169.0	146.0	김*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48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69-5	대	344.0	65.0	봉화마을회	
48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69-6	대	23.0	8.0	(공)남해군	
48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1-1	도	99.0	93.0	김*두	
48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0-2	도	268.0	268.0	(공)남해군	
48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0-1	답	756.0	144.0	문*진	
48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6-1	답	652.0	79.0	김*경	
48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6-16	도	19.0	19.0	김*순	
48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6-2	대	368.0	91.0	김*욱	
48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6-17	도	13.0	13.0	(공)남해군	
48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6-4	도	357.0	357.0	김*원	
49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6-3	전	632.0	192.0	정*순 외 1인	
49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6-15	도	110.0	90.0	정*순	
49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80-4	전	13.0	10.0	(국)국토교통부	
49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7-1	대	43.0	38.0	손*재	
49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314	천	3,347.7	252.0	(국)국토교통부	
49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19-1	답	97.0	74.0	김*주	
49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19-3	도	9.0	9.0	김*주	
49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52-1	도	107.0	11.0	김*우	
49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22-1	대	469.0	145.0	정*순	
49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22-3	도	27.0	27.0	김*약 외 1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50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76	구	298.0	97.0	(국)농림축산식품부	
50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23-1	답	16.0	16.0	김*일	
50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23-4	도	14.0	14.0	김*섭	
50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23-2	도	234.0	234.0	(공)남해군	
50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51	답	1,937.4	455.0	임*심	
50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324	구	300.0	300.0	(국)농림축산식품부	
50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24-1	도	165.0	165.0	김*재	
50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24-3	도	104.0	104.0	김*성	
50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75-2	도	311.0	311.0	(국)국토교통부	
50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48-2	도	383.0	383.0	(공)남해군	
51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52	답	1,921.8	346.0	김*훈	
51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26-1	도	1,031.0	622.0	(공)남해군	
51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53	답	834.0	149.0	윤*심	
51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54	답	1,222.1	214.0	김*원	
51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55	답	1,025.2	207.0	김*엽	
51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56	답	1,326.3	300.0	김*광	
51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68-2	도	532.0	80.0	(국)국토교통부	
51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57	답	1,056.4	211.0	박*관	
51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34-2	도	414.0	162.0	(공)남해군	
51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58	답	1,724.6	188.0	김*봉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52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59	답	1,452.2	171.0	김*정	
52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60	답	1,976.1	262.0	김*광	
52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61	답	764.2	110.0	김*주	
52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62	답	2,649.0	332.0	문*진	
52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323	도	82.7	16.0	(공)남해군	
52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63	답	703.9	88.0	정*순	
52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63-1	답	704.0	110.0	김*두	
52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64	답	2,609.2	426.0	문*수	
52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65	답	1,492.7	271.0	김*재	
52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66	답	2,195.3	507.0	김*일	
53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67	답	395.9	112.0	김*도	
53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68	답	2,104.3	588.0	김*두	
53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36-4	도	1,667.0	1,510.0	(공)남해군	
53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69	답	1,778.4	358.0	박*경	
53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322	구	791.9	435.0	(국)농림축산식품부	
53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84-2	도	132.0	132.0	(공)남해군	
53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70-1	답	459.7	43.0	박*경	
53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79-1	도	102.0	102.0	(공)남해군	
53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78-3	답	231.0	167.0	(공)경상남도	
53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70	대	650.0	4.0	박*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54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71	구	2,753.0	50.0	(국)농림축산식품부	
54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67	구	75.0	54.0	(국)농림축산식품부	
54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1	천	232,231.0	1,125.0	(국)국토교통부	
54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21-2	도	298.0	45.0	(공)남해군	
54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65	도	1,637.0	174.0	(국)국토교통부	
54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64	구	1,687.0	310.0	(국)농림축산식품부	
54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1-2	도	93.0	93.0	하*용	
54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1-7	답	143.0	18.0	(공)경상남도	
54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80	도	2,693.0	50.0	(국)국토교통부	
54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1-2	대	179.0	32.0	김*남	
55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6-8	대	129.0	70.0	윤*희	
55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6-11	대	33.0	23.0	윤*희	
55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6-7	답	99.0	34.0	김*룡	
55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6-6	답	248.0	85.0	정*순	
55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6-9	답	243.0	111.0	정*순	
55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6-5	도	110.0	105.0	(공)남해군	
55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81	구	366.0	15.0	(국)농림축산식품부	
55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7-2	도	136.0	136.0	(공)남해군	
55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84	답	4,017.0	211.0	김*주	
55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19-2	도	40.0	40.0	(공)남해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56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313	도	1,597.8	243.0	(국)농림축산식품부	
56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312	구	662.3	185.0	(국)농림축산식품부	
56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22-2	도	56.0	56.0	김*주	
56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75	도	294.0	27.0	(국)국토교통부	
56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83	답	832.6	610.0	김*일	
56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52	답	3,943.0	514.0	임*심	
56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82	답	1,130.1	105.0	황*화	
56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81	답	743.5	56.0	김*범	
56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80	답	2,178.0	19.0	김*성	
56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310	구	1,030.3	218.0	(국)농림축산식품부	
57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41-5	도	2.0	2.0	김*범	
57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34-1	도	46.0	1.0	봉화리	
57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86-5	도	246.0	16.0	(공)남해군	
57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85-6	도	168.0	26.0	(공)남해군	
57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85-3	답	499.0	12.0	김*섭	
57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84-3	답	245.0	78.0	이*주	
57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79-2	답	357.0	166.0	이*주	
57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68	도	674.0	55.0	(국)국토교통부	
57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2-5	도	17.0	17.0	김*재	
57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40-4	도	178.0	178.0	(공)남해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58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40-3	전	751.0	187.0	정*순	
58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2-3	답	36.0	36.0	서*호	
58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3-1	답	1,220.0	87.0	유*진	
58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3-2	도	7.0	7.0	유*표	
58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2-1	답	1,362.0	166.0	박*심	
58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0-6	도	559.0	559.0	(공)남해군	
58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0-4	도	215.0	215.0	김*문	
58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0-1	답	441.0	264.0	서*생	
58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9-1	도	33.0	33.0	박*오	
58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9-4	도	97.0	97.0	(공)남해군	
59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0-2	도	274.0	274.0	김*문	
59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6-1	답	769.0	160.0	김*대	
59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6-2	도	46.0	46.0	김*렬	
59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63	도	1,753.0	133.0	(국)국토교통부	
59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63-2	도	28.0	2.0	(국)국토교통부	
59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63-1	답	87.0	46.0	(국)국토교통부	
59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1-8	답	1,611.0	277.0	박*삼	
59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9-2	도	1,348.0	1,022.0	(공)남해군	
59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1-23	답	47.0	47.0	(공)경상남도	
59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1-10	답	144.0	12.0	(공)경상남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60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1-22	답	252.0	22.0	(공)경상남도	
60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1-5	답	154.0	8.0	(공)경상남도	
60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1-1	답	225.0	52.0	송*자	
60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1-3	도	318.0	312.0	(공)남해군	
60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1-4	답	459.0	26.0	송*자	
60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2-4	답	516.0	255.0	서*호	
60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0-5	답	1,316.0	82.0	서*철	
60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9-2	답	495.0	64.0	서*호	
60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0-3	답	237.0	135.0	유*열	
60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4	답	261.0	34.0	유*열	
61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3-8	답	271.0	62.0	유*문	
61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3-1	창	351.0	30.0	손*아	
61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1-20	답	614.0	48.0	(공)경상남도	
61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1-17	창	461.0	14.0	(공)경상남도	
614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066	천	64,260	135	(국)국토교통부	
615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066-14	대	113	40	김*봉	
616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019-9	대	174	99	김*봉	
617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019-4	대	508	13	김*석	
618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091-4	도	74	15	(국)기획재정부	
619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019-2	도	761	633	(공)남해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620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017-8	도	31	25	장*경	
621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017-7	도	13	11	이*순	
622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016-1	도	1,156	105	(공)남해군	
623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066-44	대	29	29	(공)경상남도	
624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019-16	대	88	88	(공)경상남도	
625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019-15	대	1	1	김*봉	
626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017-5	대	47	28	(공)남해군	
627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017-11	대	72	11	정*진	
628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402-2	도	198	20	(공)남해군	
629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402-10	도	136	20	(공)남해군	
계					119,989.4		

남해군 고시 제2022-173호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나. 위 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 290-1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L=269m
- 라. 사 업 비 : 금2,800,000,000원(금이십팔억원)
- 마.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4년 12월
- 바. 시 행 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

2. 설계도서 열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3. 다른 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4.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해소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5.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사업내용	- 실시설계 - 정비사업	- 실시설계	- 정비사업	- 정비사업	
사업비(천원)	2,800,000	200,000	1,222,000	1,37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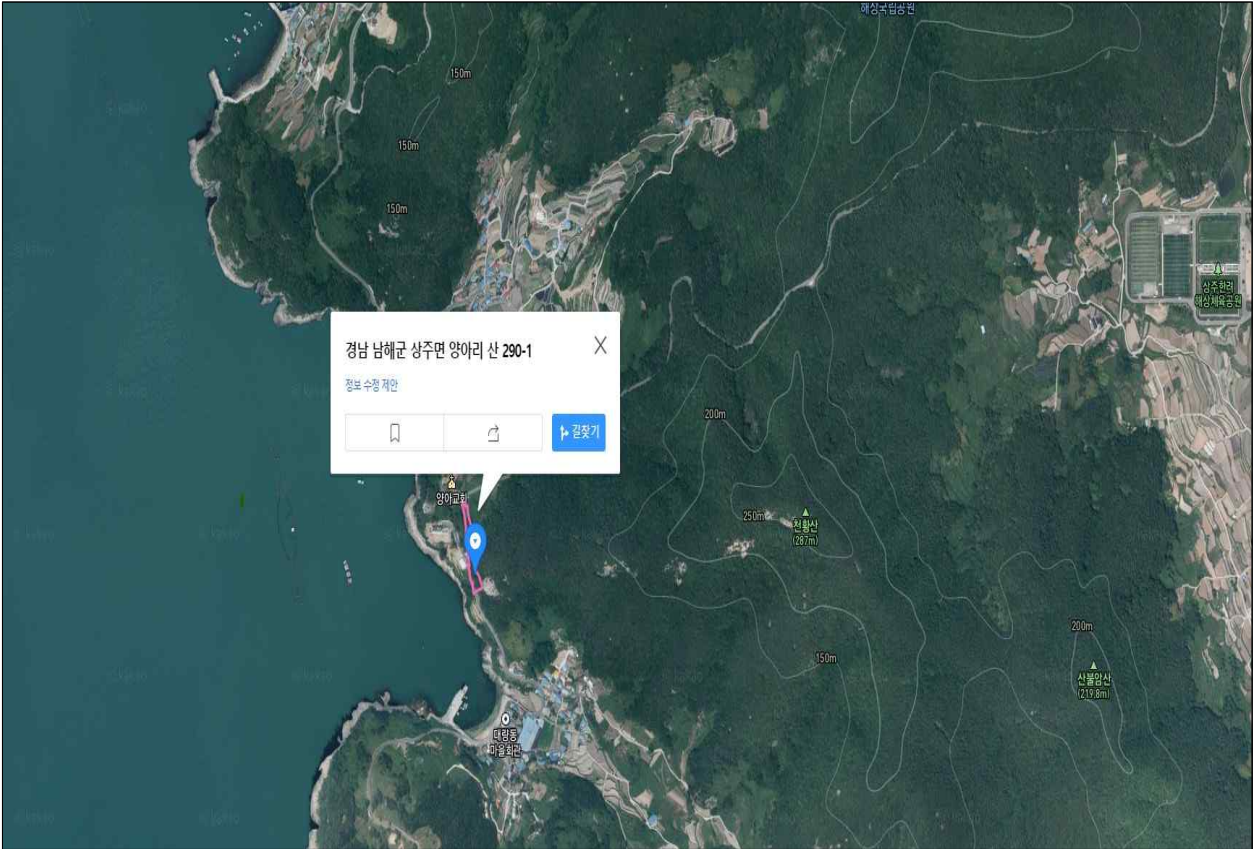
6. 유지관리계획

- 가. 정비공사 완료 후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을 조정하고 (필요시)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
-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로 안전 및 유지관리 만전을 기함.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명세 : 불임참조

8. 기타사항 :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55-860-3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및 전경사진



□ 편입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1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 291-2	임	19	19	1/1	박태○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박재○	경남 창원 시 의창구 명지로 109 번길	재산세 납부자	
2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 290-1	임	2,609	2,609	1/1	김해김씨 남해송화 총친회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560번길				
3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808	전	69	69	1/1	전만○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 로				
4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809	전	112	112	1/1	김영○					
5-1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 289-2	임	880	880	1/1	김옥○	부산시 서구 과정동	김성○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 수로	자녀	
5-2									김희○	경남 김해 시 삼계로	자녀	
5-3									김강○	전라북도 정읍시 연 지7길	자녀	
5-4									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 일로	자녀	
5-5									김판○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 로	자녀	
6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812	전	258	258	1/1	빈영○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560번길				
7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813-1	전	286	286	1/1	김태○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1718호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남 해 군 수

- 1. 공 고 명 : 도로지정 공고
-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 3. 공고기간 : 2022. 12. 22. ~ 2023. 1. 6.
- 4. 도로지정 공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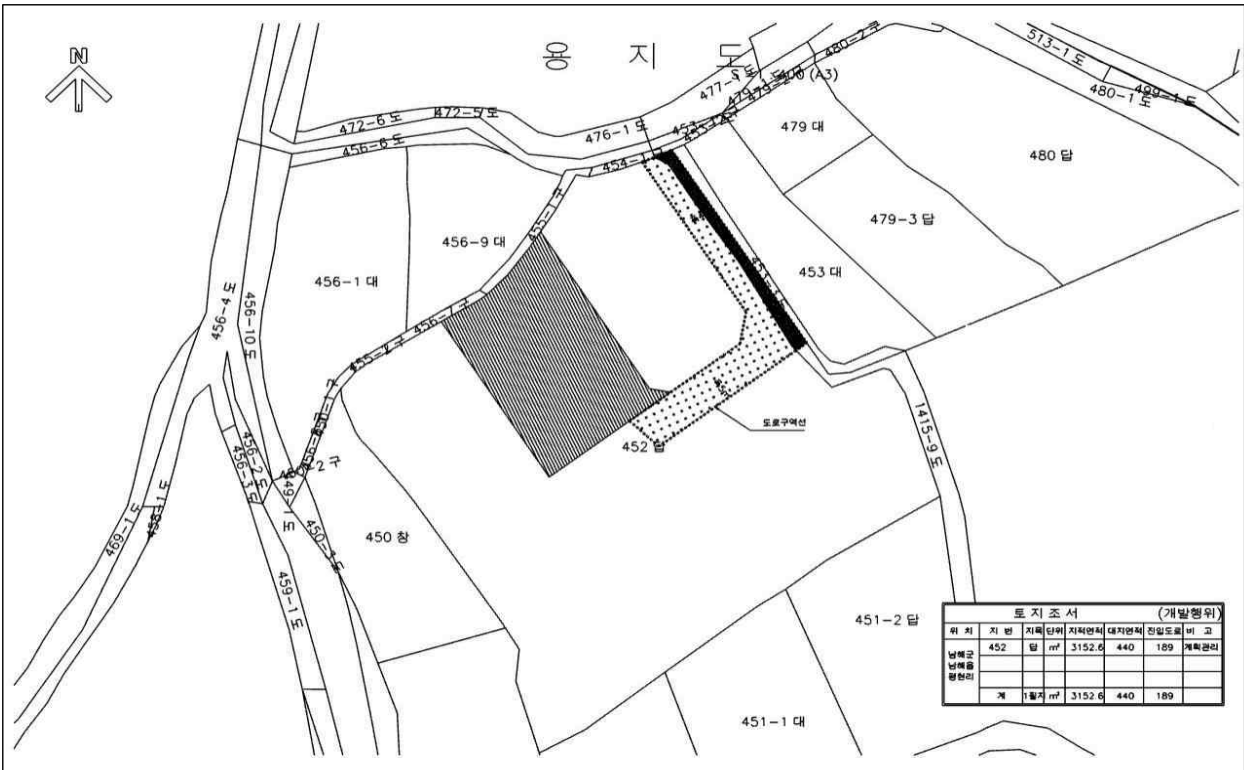
건축위치	소유자	길이	너비	도로위치	면적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남해읍 평현리 452	정기0	49m	4m	남해읍 평현리 452	189㎡	동의

-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 6. 문의사항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남해군청 관광경제국 도시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055-860-3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현황도



남해군 공고 제2022-1725호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공해 조치 대상 경유자동차를 확대하고 건설기계를 추가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남해군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 확대
 - 당초 배출가스 5등급에서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 및 건설기계 추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남해군수(환경과장)에게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1) 우편: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환경과
- 2) 팩스: 055-860-3707
- 3) 메일: ys11@korea.kr
- 4) 직접방문: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환경과(구 상하수도사업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55-860-3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와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5. “저공해 조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다.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남해군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이 된다.

1.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중 별표17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군수는 제3조의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1738호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남해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예방 지원 사업(안 제8조 ~ 제9조)
- 나. 안전보건지킴이 및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안 제10조, 제12조)
- 다.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13조 ~ 제1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월 1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622,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전화 055-860-3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남해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의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장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의 예방활동 지원
-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 8.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내 사업장 지도
-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예방활동
-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체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사업체를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체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체 포상
- 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군수는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1.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 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

- 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 5.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
-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

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1754호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2.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업종별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의 시설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위생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안 제1조~제2조 : 목적, 정의
- 나. 안 제3조 : 시설기준 적용특례 적용대상
- 다. 안 제4조 : 시설기준 적용특례 적용 제외대상
- 라. 안 제5조 : 시설기준(별표 1, 별표 2)
- 마. 안 제6조 : 이동판매대 이용 영업자에 관한 사항
- 바. 안 제7조 : 영업의 신고 등
- 사. 안 제8조 : 영업자의 준수사항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월 16일까지(21일간)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13, 남해군 선소로 6, 남해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안전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8741, 팩스 055-860-8799
이메일 hijin0403@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안전팀(☎ 055-860-87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나.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 행위를 하려는 경우
 - 다.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라.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적용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营业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별표 1
2. 식품접객업 : 별표 2

제6조(이동판매대 이용 영업자)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하려는 자는 이동판매대를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동판매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3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②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이 규칙에 따라 영업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공통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

1. 작업장

- 가. 작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연기·유해가스 등 발생하지 않는 등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 다. 1명의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다.
- 라.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도록 뚜껑 또는 덮개형태의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진열·판매시설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화장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

1. 영업장

- 가. 영업장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나. 연기·유해가스 등 발생하지 않는 등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 다.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라. 영업장 안에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마. 영업장 내·외부에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메뉴판 및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바. 손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조리장

- 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나.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세척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기 등)
-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사.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 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아. 음식물류 폐기물은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 가. 식품을 진열·판매할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도록 뚜껑 또는 덮개형태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진열·판매시설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화장실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 또는 지정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1. 이동판매대의 구조 및 재질 등
 - 가.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 (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되어야 한다.
 - 나. 이동판매의 형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동판매대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 하여야한다.
 - 다. 이동판매대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원재료
 -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3. 조리식품
 - 가. 식품은 뚜껑 이나 덮개가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4.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구용기
 -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6. 개인위생관리
 -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7. 주변환경
 -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별지 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 제출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핸드폰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영업의종류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행사명			
	영업기간			
	영업장의 소재지 및 면적			
세부영업내역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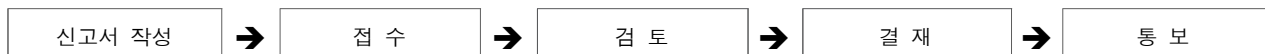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시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수수료
28,000원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6.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남해군 공고 제2022-1757호

남해군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운영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남해군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남 해 군 수

1. **훈령명** : 「남해군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운영 규정」 폐지안

2. 폐지이유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같은 사항을 규정한 훈령을 폐지하고자 함.

- 훈령 :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를 이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관한 사항
- 제정 규칙 : 전통시장, 군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월 16일까지(21일간)

- 이 훈령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13, 남해군 선소로 6, 남해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안전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8741, 팩스 055-860-8799
이메일 hijin0403@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안전팀(☎ 055-860-87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훈령 제 호

**남해군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운영 규정 폐지훈령안**

남해군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 행 훈 령 】

남해군 훈령 제297호

남해군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사’ 항 적용특례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남해군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 육성으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말한다.
2. “문화관광형시장” 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정한 시장을 말한다.
3. “이동판매대” 라 함은 남해전통시장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된 남해전통시장구역 내 이동 판매대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2조제4호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준용하고, 남해전통시장구역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영업조건 부여) ① 이 규정을 적용 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지정된 영업기간과

[별표 1]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 시설기준, [별표 2]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영업기간은 군수가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육성사업단 및 시장 상인회와 영업자가 협약한 계약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신고 취소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증 교부) 남해전통시장 구역 내 이동판매대 품목별 영업 신고증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영업신고 취소) 제5조의 영업 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를 취소한다.

1. 군수, 문화관광형시장(남해전통시장)육성사업단 및 시장상인회, 이동판매대 영업자간 체결한 협약서의 질서유지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 된 때
2. 체결한 협약서의 이동판매대 영업자 외 타인에게 영업을 하게 한 때
3.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매뉴얼 3회 이상 위반한 때
4. 집단 식중독 환자 2인 이상 발생한 때
5. 그 밖에 이 영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제8조(기타) 본 규정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며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1760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관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상위 법령에 맞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양식어장 자동화 및 양식물의 자연재해 등 대비, 나잠어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타 조례 제정 추진에 따른 중복사항 삭제(조례안 제9조제2항)
- 조직 개편에 따른 단체별 지원 내용의 담당부서 수정 : 별표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3년 1월 1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 농축산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05, 팩스 055-860-3981
이메일 cho7105@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전화 055-860-39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3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양식어장 자동화를 위한 장비 및 자재 지원
- 라. 자연 재해 등으로부터 양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비용 지원
- 35. 나잠어업인의 안전장비 및 휴식 공간 제공에 필요한 사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단체별 지원 내용(제12조 관련)

단 체 명	지 원 내 용	담당부서(팀)
농협중앙회남해군지부 군내 지역 농·축협	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축산정책팀)
(사)농촌지도자 남해군연합회	연합회·읍·면회의 운영(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참가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남해군연합회	연합회·읍·면회의 운영(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참가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사)여성농업인 남해군연합회	운영 지원(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참가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남해군 4H연합회	영농 및 학교4-H회 시범사업 및 과제 활동, 중앙(도)연찬 참가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남해군강소농회	강소농 운영지원(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시범사업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사)전국한우협회 남해군지부, 남해 낙우회	축산,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 축산·낙농기술 벤치마킹, 판매홍보, 각종 행사 참가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양봉협회 남해군지부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 양봉기술 벤치마킹, 판매홍보, 각종행사 참가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남해군 특산물 생산 유통협의회	직거래장터운영지원, 국내외 선진 유통 홍보 판매 기술 벤치마킹	유통지원과 (통합마케팅팀)
(사)한국생활개선 남해군연합회	회 운영 지원(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참가 및 분야별 전문연구회	유통지원과 (농촌자원팀)
보물섬 국화연구회	국화 전시회, 작품 생산 및 선진지 견학, 재배기술 교육	유통지원과 (소득개발팀)
체험마을연합회	선진지 견학 및 홍보, 체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동	유통지원과 (소득개발팀)
농촌체험·휴양 마을회	농촌체험 기반 조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험마을 운영 교육	유통지원과 (소득개발팀)
남해군정보화 농업인회	농업 e-비즈니스 정보화	유통지원과 (소득개발팀)

단 체 명	지 원 내 용	담당부서(팀)
남해군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운영지원(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농업기술과 (환경농업팀)
(사)한국쌀전업농 남해군 연합회	회 운영 지원(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참가 고품질 벼 재배 기술 선도 실천 및 해외 벼 재배동향, 가공품 개발 벤치마킹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
보물섬 남해시금치 연합회	시금치 재배기술 등 경쟁력 제고	농업기술과 (원예특작팀)
남해 섬애약쑥 작목회	섬애약쑥 재배기술 등 경쟁력 제고	농업기술과 (원예특작팀)
남해군 참다래연합회	참다래 재배기술 등 경쟁력 제고	원예특작팀
남해파프리카 수출농단	남해파프리카 수출 관련 지원 및 경쟁력 제고	농업기술과 (원예특작팀)
보물섬미니단호박 작목회	미니단호박 재배기술 등 경쟁력 제고	농업기술과 (원예특작팀)
(사)한국참다래연합회 남해지회	참다래 재배기술 등 경쟁력 제고	농업기술과 (원예특작팀)
보물섬남해마늘 작목회	회 운영(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선진마늘재배 기술 벤치마킹 국·내외 연수, 시범사업 마늘축제 참여 및 홍보	농업기술과 (마늘팀)
남해군수산업 협동조합	어업인의 역량강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회의, 교육, 견학, 연찬, 행사 등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수산업경영인 남해군 연합회	해외연수 및 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 치어방류 및 해안정화활동 등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남해군 낚시연합회	전국 낚시대회	해양발전과 (해양레저팀)
남해군어촌계장 연합회	어업인의 역량강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회의, 교육, 견학, 연찬, 행사 등	수산자원과 (어업진흥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어업인의 역량강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회의, 교육, 견학, 연찬, 행사 등	수산자원과 (자원조성팀)

남해군 공고 제2022-1761호

남해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2. 제정 이유

국민이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 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0.12.22. 전부개정 된 청원법이 2022.12.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2조)
- 나. 청원업무의 주관부서와 처리부서의 정의(안 제3조)
- 다. 청원심의회 원칙(안 제4조)
- 라.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제9조)
- 마. 청원심의회 심의사항 및 개최요구(안 제10조~제11조)
- 바. 청원심의회 위원 수당(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월 1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68,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협력조정팀(전화 055-860-30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훈령 제 호

남해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남해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심의회 구성·운영 등 청원의 총괄적 운영에 관한 업무는 청원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제4조(청원심의회 원칙)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주관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군 소관 사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
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10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
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
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건	
일시	. . .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남해군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 의 의 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남해군 공고 제2022-176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김봉0	주소	남해군 남면 남면로 00
	소하천명	채양천		
공사 (점용·사용) 개 요	위치	남해군 남면 죽전리 884-1		
	면적	24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3. 1. 1. ~ 2027. 12. 31.		
	목적 및 사유	경작		

남해군 공고 제2022-177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 (해양발전과장)	주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소하천명		장항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서면 서상리 1682번지(879-6인근)		
	면적	임시 : 226.2㎡ 영구 : 159.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3. 1. 1. ~ 영구		
	목적 및 사유	장항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관련 교량 설치		